

# 배달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법제 개선 제안

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

# 현행 법제



폐기물관리법 :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

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(이하 '자원재활용법')  
: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법



자원순환기본법 :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법

자원의 절약  
과 재활용  
촉진에 관한  
법률

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 
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 
촉진하기 위함

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·포장재의  
생산자에게 생산자책임의 원칙에 따라  
재활용 의무를 부과

#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



자원의 절약과 포장폐기물  
발생억제, 1회용품의 사용  
억제, 폐기물부담금



제품 및 개발사업의  
자원순환성 향상



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,  
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사용  
촉진, 재활용부과금



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 
운영



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 
및 운영 등을 강화하여  
규정



자원순환을 촉진

자원의 절약과

폐기물 발생 억제

## 1. 포장폐기물

- 자원재활용법에서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·보관·취급·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**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를 뜻한다고 규정(법 제2조 제 14호).**

자원의 절약과

폐기물 발생 억제

## 2. 일회용품이란,

- 자원재활용법, 식품위생법 등에서 의미하는 1회용품이란, 용도에서 **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**으로 1회용 컵·접시·용기, 1회용 나무젓가락, 1회용 수저·포크·ナイ프, 1회용 광고 선전물, 1회용 면도기·칫솔, 1회용 치약·샴푸·린스 등이 해당

자원의 절약과

폐기물 발생 억제

### 3. 일회용품 사용 억제

- 식품접객업, 음식점, 목욕장업,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, 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(법 제10조). 단, 접객업소 등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,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및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한다.

자원의 절약과

폐기물 발생 억제

#### 4. 폐기물 부담금

- 제품에 특정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가 있는 제품이나 용기에 대하여, 그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이나 용기의 제조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제도
-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하여 부과

## 폐기물 재활용촉진

- 분리배출표시 및 분리수거
-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
- 재활용 부과금

# 배달 1회용품 관리의 문제점

- 배달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용기는 일회용품인가?
- 포장재인가?
- 현재 국내 법규상 1회용 종이커피 컵처럼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(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)에서 선별대상 품목으로 1회용 배달용기의 분리배출 및 선별, 재활용 관련 규정이 없음

# 배달 1회용품 관리의 문제점

- 결과적으로 1회용 배달 용기는 현행 법규에서 재활용 책임과 분리배출 및 선별, 수거와 관련하여 어느 부분에도 속해 있지 않아 기존의 재활용 수거 체계와 연계가 어려운 현실
- 1회용 배달 용기의 경우 제품 및 포장재에 관하여 재활용 비용을 내는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둘 중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음
- 결과적으로, 1회용 배달 용기에 관한 재활용 정책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음

배달 1회용품

줄이기 위한

법제 개선방안

## 1. 1회용품 사용규제 예외 조항 삭제

- 자원재활용법에서 1회용품은 규제대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억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나, 규제대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는 전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일회용품 사용이 남용될 수 있고,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
- **1회용품 사용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함**으로써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(1회용 배달용기)에 대한 사용도 규제할 필요가 있음

배달 1회용품

줄이기 위한

법제 개선방안

## 2. 포장재의 범위 세분화 필요성

- 1회용 배달 용기는 개념적으로 1회용 포장재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, 효과적인 포장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대상 포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배달 1회용품  
줄이기 위한  
법제 개선방안

## 2. 포장재의 범위 세분화 필요성

- 제품의 전 과정과 관련하여 '제품의 수송·보관·취급·사용 등의 과정'이라는 제조, 유통, 사용단계에 걸친 가장 광범위한 단계를 규정하고 있고, 또한 '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, 용기 등'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
- **1회용 배달 용기와 같은 소비자 포장을 관리 대상으로 하여 포장 및 포장 폐기물 특성별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**

배달 1회용품

줄이기 위한

법제 개선방안

## 2. 포장재의 범위 세분화 필요성

- 이를 위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된 포장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부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
- 독일의 경우 포장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책임과 관련하여 상품 포장과 판매 포장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참고할 만

배달 1회용품

줄이기 위한

법제 개선방안

### 3. 빈용기 보증금제 활용

- 빈 용기 보증금제는 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고, 빈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 빈 용기의 수거가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

배달 1회용품

줄이기 위한

법제 개선방안

### 3. 빈용기 보증금제 활용

- 그러나 빈 용기의 보증금액 자체가 소비자로 하여금 빈 용기 반환을 유인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
- 빈 용기 보증금제가 소비자에게 반환의 유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, 독일의 일회성 용기(포장재)에 대한 강제 예치금 제도와 같이 보증금액을 상향시켜서 동 제도가 시장 내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

배달 1회용품

줄이기 위한

법제 개선방안

#### 4. 배달 1회용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

-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부여하여 제품의 설계, 생산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
- 독일의 경우에는 보조용 포장재로 소비자로 부터 이를 회수하여 재이용 또는 재활용할 의무를 판매자에게 부과

배달 1회용품  
줄이기 위한  
법제 개선방안

## 5. 포장폐기물관리 입법

- 포장 폐기물은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, 포장재료의 사용과 포장의 시행 및 포장 폐기물 발생 등 포장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관리할 필요
- 포장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독일의 경우처럼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령(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및 회수에 관한 명령, VerpackV)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음